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각칭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1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계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화(☎) 044-201-3839 / 팩스 044-201-558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기관 : 전국전세버스연합회

개정 (안)	수정 (안)	검토의견 (사유)
<p>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 ----- ----- - 세부기준, 동력원별 세부기준에 ----- -----</p>	<p>반대(현행유지)</p>	<p>○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기존 규모별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유 차고지 면적 기준을 중·대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중·대형 차량 기준이 개정령(안)과 같이 변경될 경우,</p> <p>○ 기존 중형승합차가 대형승합차인 승기준 범주에 해당됨에 따라 중형승합차의 경우 차고지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경여부담 가중으로 전세버</p>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23인 이하이거나, 길이가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23인 초과이거나, 길이가 9미터 초과인 것
----------------------------------------------	--------------------------------

개정 (안)	수정 (안)	검토의견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반대(현행유지)</p>	<p>스 운송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법안이라 판단됩니다.</p> <p>*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대형 36㎡~40㎡, 중형 23㎡~26㎡</p> <p>○ 또한, 23인승 초과 차량은 대형 승합차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형 승합차 기준으로 가입해야 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p> <p>* 전세버스 공제조합 기본분담금(보험료) 기준 대형승합차 1대당 약 480만원, 중형승합차 1대당 약 295만원으로 185만원 추가 분담금 발생</p>

개정 (안)	수정 (안)	검토의견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반대(현행유지)</p>	<p>○ 차량 보험료, 차고지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는 운송요금 증가로 이어져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이용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중형차 기준 변경에 따른 각종 비용증가에 따라 사업자 영세 경영으로 인해 안전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증가 우려</p> <p>** 각종 비용 증가는 운송요금 증가가 불가피하여 이용국민의 부담 가중</p> <p>○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극 반대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세부기준에”를 “세부기준, 동력원별 세부기준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 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 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 준 및 유형별 <u>세부기준에</u>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 ----- ----- ----- <u>세부기준, 동력원</u> <u>별 세부기준에</u> -----.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소 형	일 반 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 시시(전기자 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 시시(전기자동 차의 경우 최 고정격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 시 미만이고, 길 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 시시 이상 2,000 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 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 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 0시시 이상이 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 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 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80 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 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가 3.6미터 초과 6미 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23인 이하 이거나, 길이가 6미터 초과 9미 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23 인 초과이거나, 길이가 9미 터 초과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 시시(전기자 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 시시(전기자동 차의 경우 최 고정격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 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 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 톤 초과 5톤 미 만이거나, 총중 량이 3.5톤 초과 10톤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 0톤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250 시시(전기자 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 시시(전기자동 차의 경우 최 고정격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 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시 시 이하(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시 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 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 시시(최고정격 출력 15킬로와 트)를 초과하 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 용 자 동 차	일 반 형	2열 이하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 용 겸 화 물 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 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 자동차인 것
승 합 자 동 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사람(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 수 형	특수한 설비(장의·현혈·구급·보도·휠체어 고정장치 등)를 가진 것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 운송용인 것
	밴 형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자 동 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 수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 른 자 동 차	일 반 형	사람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과 측차를 붙인 것
	기 타 형	삼륜 이상인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특수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 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3. 동력원별 세부기준

종 류		동력원(사용 연료)별	세 부 기 준
자동차 (이륜 자동차 포함)	내연기관 자동차	탄화수소계 연료형	연소실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된 동력으로 구동되는 자동차
		수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탄화수소계 연료와 전기에너지의 조합형	탄화수소계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 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 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에너지형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수소형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태양에너지형	태양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기타형 자동차		위 자동차 중 어느 동력원에도 속하지 아니 하는 것

주) 1. “탄화수소계 연료형”이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말한다.